

건축저작물의 보호

Protection for Architectural Copyright

오늘날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이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공과 이용,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건축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창작이란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간과 환경의 조화, 사용의 편리성, 미적 창작성 등의 다양한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최종 건축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간예술적 요소, 시공기술적 요소, 구조적 요소,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합니다.

1. 건축저작물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건축저작물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건축물은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 정동근
 Jeong, Dong-geun
 법무법인 조올 변호사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2. 건축저작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제2조 제2호에 따라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건축저작권자는 건축저작물의 저작자인 건축설계를 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건축저작물인 건축설계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건축사보의 도움을 받아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사가 건축물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법인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조가 정하는 업무상 저작물 법리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닌 법인이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됩니다.

건축주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한 경우에도 설계저작권은 설계를 수행한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시에 저작권을 건축주나 의뢰자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은 건축주나 의뢰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3. 건축저작권의 권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건축사)는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저작재산권	복제권	<p>저작권법 제2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p> <p>저작권법 제35조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전시 전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p>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p>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건축설계도서를 양도받은 소유자는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시 개방된 장소에 전시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건축사의 건축물을 승낙 없이 책으로 출판하여 판매한다면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저작물에서 계획(또는 중간설계) 단계 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바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p>
저작인격권	공표권	<p>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1조)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저작권법 제11조 제3항)하고 있으므로, 미공표 설계도서와 모형의 소유권자(저작재산권자)는 창작자(저작 인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도서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p>
	성명 표시권	<p>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건축저작물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업무에 의해 건축설계를 완성하여 저작재산권을 건축주나 의뢰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설계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건축물이 언론(신문, 방송 보도),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저작자인 건축사의 성명이 누락된 채 건축주나 건설회사만 발표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p>
	동일성 유지권	<p>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3조)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에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증축이나 개축 등의 변형이 불가피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변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건축물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건축 저작물 중 건축물에 한정되며 도면이나 설계도서와 같은 기타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건축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는 증축, 개축과 같은 저작물의 변형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파괴와 같이 건축저작물의 본질적인 변경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p>

4. 건축특허

특허법에 의하면, 건축도면과 관련한 건축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의 저작물과 특허법상의 발명에 중첩적으로 해당할 수 있어 어느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건축의 기술적, 공학적 측면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공간적 예술의 창조적인 가치와 그 심미성을 표현한 것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독창성 이외에 절차, 체제, 원리 또는 발견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들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요소가 됩니다.

5. 판례

가. 저작권법 위반(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도5295)

공식적으로 공표 등록된 건축저작물과 유사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저작권 공표 후 등록 전에 복제하는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의 위반사항이다.

나. 저작권침해금지처분(대법원 2000.6.13 선고, 99마7466)

건축주가 완성된 설계도서를 교부받아 설계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 중단되었다면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다. 건축저작물의 광고 이용에 대한 법적 분쟁(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12. 선고, 2006가단208142)

“광고 속 건축물도 저작권료 지급하라”, TV 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저작권’을 인정해, 광고제작사 측이 저작권자인 건축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건축설계 저작권 불공정 약관심사청구(공정거래위원회 2009.5.25)

건축설계 입상작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마.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 카페 외관은 여러 특징이 함께 아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 참고

▶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조정	알선	소송
관련법	저작권법 제113조, 제114조 내지 제118조 등	저작권법 제113조, 제113조의2, 시행령 제59조의2	저작권법, 민법 등
개요	1인 또는 3인 이상의 저작권 전문가(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 함)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조정	1인의 저작권 전문가가 알선위원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	분쟁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판사의 판결을 통해 분쟁 해결
분쟁 비용	1만원~10만원	무료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기한	접수일로부터 3개월(동의하에 1개월 연장 가능)	기한 없음(평균 2개월,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단, 조정신청 시 알선 중단)	기한 없음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 간에 합의 후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조정조서에 의해 강제 집행도 가능)	알선이 성립한 경우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 날인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민법상 화해(계약)	침해방지 요청, 손해배상 등
조정 신청 금액 (손해 배상)	침해로 인한 손해 금액 내(또는 침해자의 이익 내) 조정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알선을 통해 합의된 금액	침해로 인한 손해 금액 내(또는 침해자의 이익 내) 손해배상 및 소송 비용 등
장점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비밀유지 등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등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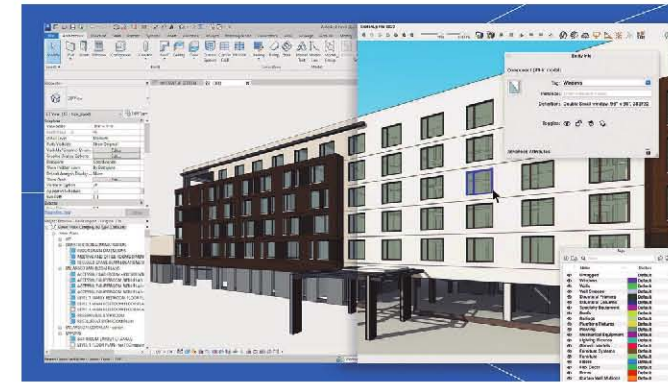
자료=건축공간연구원(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2017년)

SketchUp 신규버전 출시

더욱 편리해진 스케치업을 지금 경험하세요.

스케치업 2023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합니다.

Revit Importer 기능 추가



스케치업 스튜디오 제품에 포함된 Revit Importer는 레빗 모델을 스케치업으로 정확하고 쉽게 변환시켜 줌으로써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모델을 보다 가볍게 운영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스케치업 아이패드 기능개선

새로 업데이트 된 스케치업 아이패드는 호버링, Soild 툴, 즐겨찾기 메뉴 등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보다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기능은 M2칩셋 이상의 H/W만 지원

LayOut의 DWG 파일 관리

이제 레이아웃에서 DWG 파일을 레퍼런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레퍼런스 파일을 확인하고, 레퍼런스 매니저를 사용해 파일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하세요.

스케치업의 더 많은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초록창에 '스케치업' 을 검색하세요!